

朝鮮初期의 喪祭

崔 在 錫*

머리말

1. 高麗末의 喪祭

2. 法制로서의 朝鮮初期의 喪祭

3. 實際로서의 朝鮮初期의 喪祭

맺는말

머 리 말

朝鮮時代의 葬·喪·祭制, 養子制, 婚姻制, 財産相續制 등과 같은 家族制度 가운데 韓國固有의 傳統의 制度를 그대로 維持해온 것은 財産相續制였고⁽¹⁾ 韓國固有의 制度를 돌보지 않고 가장 中國의 制度를 模倣하고 導入하여 定着시킨 것은 葬·喪·祭制이고 그 中間領域의 것이 養子制와 婚姻制가 아닌가 생각한다. 葬·喪·祭制에 對하여 살펴보면 火葬에서 屍體埋藏의 葬禮로, 形式的, 法制的인 五服制에서 實際 지켜지는 五服制로, 佛寺에서의 佛敎式에 依한 祭祀에서 家廟에서의 儒敎式祭祀로 점차 옮겨져 갔다.⁽²⁾

本人의 分財記分析에 依하면 朝鮮前期의 祭祀는 朝鮮中期까지는 長子奉祀와 子女間의 輪行 내지 分割奉祀의 두가지 類型이 存在하다가 中期부터는 子女間의 輪行奉祀는 長子奉祀로 變해져가서 드디어는 모두 長子奉祀라는 하나의 形式으로 變遷하였다.⁽³⁾

그런데 여기서 朝鮮中期 以前の 두가지 祭祀類型인 長子奉祀와 子女輪行奉祀는 아무래도 各各 서로 다른 歷史的·社會的背景에서 由來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輪回·分割奉祀의 근원은 高麗에 있을 수 있으나 長子奉祀의 社會的 基盤은 高麗에는 없기 때문이다. 卽 隣接 遺 時代인 高麗時代는 埋藏이 아닌 火葬에 依해 그 遺骨을 佛寺에 安置하여 佛敎式에 依한 祭祀儀式을 行할 뿐만 아니라 家産인 土地와 奴婢는 子女 간이나 長·次 간의 差別이 없는 均分相續이어서⁽⁴⁾ 朝鮮初期의 長子奉祀는 아무래도 서로 다른 歷史的·文化的 基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高麗大學校 文科大學 敎授

(1) 崔在錫,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關한 研究>, 《歷史學報》53·54 合輯號, 1972.

(2) 葬·喪祭制도 朝鮮初期까지는 固有의 것(高麗의 것)이 많이 지켜졌으며 養子는 朝鮮前期까지는 거의 行하지 않다가 後期로 내려올수록 一般化되었다(崔在錫, <朝鮮時代의 養子制와 親族組織>, 《歷史學報》86, 87, 1980 參照).

(3) 註(1) 參照.

(4) 崔在錫, <高麗朝에 있어서의 土地의 子女均分相續>, 《韓國史研究》35, 1981.

本稿에서는 먼저 高麗時代의 葬·喪·祭制를 알아 본 다음 朝鮮初期의 喪祭를 實際로서의 喪祭와 法制로서의 喪祭로 나누어 考察하여 이 兩者가 어디서 緣由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1. 高麗末의 喪祭

朝鮮時代와는 달리 高麗時代는 普遍的으로 火葬의 過程을 거쳐 葬禮(埋藏)을 치른다. 即 高麗時代는 死亡→火葬·拾骨→佛寺遺骨安置(權安)→埋藏(埋骨)의 過程을 밟게 된다.

臨終의 場所는 私第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佛寺에서 臨終을 맞는다. 火葬은 大體로 佛寺 近處의 山麓에서 하게 되고 遺骨은 普通 佛寺에 安置하고 儀式을 行하게 된다.

- A₁. 子宗夫赴喪拾遺骨△至京師 置于城外天台寺 朔望奉祀不闕 君又殂逝奉喪 始初遂以皇統六年十月十八日甲寅 合葬于長端縣西北山之南麓禮也 (崔時允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11)
- A₂. 且臣庶治喪設齋 致婦女上寺 漸復舊俗(世宗實錄 卷 55 世宗 14年 壬子 三月 甲子條)
- A₃. 人之威佛已久 齋僧之風尙未盡革 忌日則名曰僧齋 徒知飯僧之爲急(世宗實錄 卷 44 世宗 13年 辛亥 12月 丁巳條)

埋藏 以前の 佛寺에 安置된 遺骨에 對한 儀式은 A₁과 A₂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朔望奉祀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佛教式「齋」임을 알 수 있다. 埋藏 以後에 行하는 祭祀도 「僧齋」라 부르는 佛教式「齋」儀式이며 忌日에 行함을 알 수 있다.⁽⁵⁾

遺骨은 佛寺에 安置하여 一定期間 祭祀를 지내게 되지만 그렇다면 死亡부터 埋藏까지의 期間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자. 이 期間은 屍體를 火葬하여 佛寺에 安置하는 期間과 거의 一致한다. 왜냐하면 死亡부터 火葬까지의 期間은 普通 數日 내지 十餘日에 不過하여 火葬부터 埋骨까지의 期間에 比하면 無視해도 좋을 정도로 짧기 때문이다.⁽⁶⁾ 現存의 高麗時代

〈표 1〉 死亡에서 埋葬까지의 期間

年度	期間													
	3日	15日未滿	1個月未滿	2個月未滿	5個月未滿	8個月未滿	12個月未滿	2個年未滿	3個年未滿	4個年未滿	5個年未滿	6個年未滿	7個年未滿	
1041~1100	—	—	1	1	—	1	—	—	—	—	—	—	—	
1101~1150	—	1	2	2	4	1	7	4	1	—	—	1	—	
1151~1200	—	1	14	4	5	4	3	5	1	—	—	—	1	
1201~1250	—	2	2	4	2	—	—	—	—	—	—	—	—	
1251~1300	—	—	—	3	—	—	—	—	—	—	—	—	—	
1301~1350	—	—	13	10	6	1	—	—	—	—	—	—	—	
1351~1392	4	—	3	4	4	—	—	—	—	—	—	—	—	

(5) A₂와 A₃은 朝鮮時代に 들어와서 佛教式 祭祀를 禁止하고 朱子家禮式 家廟祭祀를 法制의 規定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여전히 高麗의 佛教式 喪禮祭祀가 行해져 왔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史料에서 高麗의 祭祀의 特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 崔在錫, 〈高麗時代의 喪·祭制〉, 《鄭在覺博士古稀紀念東洋學論叢》參照.

의 墓誌銘에서 死亡日과 埋藏日이 確實한 것을 골라 그 期間을 調査하니 <표 1>과 같았다. (7)

우리는 위의 <표 1>에서 첫째 高麗前期에서 後期로 내려올 수록 死亡부터 埋藏까지의 期間이 短縮되는 傾向을 보이며 둘째 심한 경우는 1年 以上 2·3年 期間의 것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高麗末의 三日葬은 火葬을 하지 않고 屍體를 그대로 埋葬하는 事例인데 이런 경우를 除外하면 거의 전부 火葬을 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遺骨은 長期間 佛寺에 安置하여 僧侶들로 하여금 佛教式「齋」에 의한 祭祀를 行하게 하였으니 高麗의 百日葬·三年喪⁽⁸⁾은 實際와 다른 形式的인 制度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朝鮮中期 以後의 朱子家禮에 의한 喪禮나 祭祀와는 判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러한 儒敎的 喪·祭에 依據한 父系親 내지 長子(喪主) 中心의 喪禮·祭祀組織이 存在할 수 있는 基盤이 高麗社會에는 없었음을 알 수 있겠다. 高麗時代의 喪·祭가 전적으로 佛教式이었다는 것은 「高麗史」列傳의 鄭夢周傳의 「時俗喪祭 專尙桑門法」이라는 句節에 依해서도 明白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喪·祭도 高麗末에 이르러서는 若干의 變革이 일어났다. 卽 朱子家禮의 傳來로 말미암아 從來의 火葬에 對한 論難이 일어나 恭讓王 1年(1389年)에는 憲司가 火葬 禁止를 上疏하기에 이르렀다. (9)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鄭夢周가 처음으로 士庶로 하여금 朱子家禮를 모방하여 家廟를 세워 先祀를 받들게 하였다고 하지만⁽¹⁰⁾ 墓誌銘 等に 依하면 이보다 먼저 家廟를 세워 祭祀를 지낸 事例가 있는 것 같다. 卽 鄭克溫墓誌銘(1215年)⁽¹¹⁾, 鄭仁祠堂記(1346年)⁽¹²⁾, 崔文慶墓誌銘(1345年)⁽¹³⁾에 依하면 그들은 各各 死後에 家廟에서 奉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7) 崔在錫, 上揭論文.

(8) 高麗時代의 百日喪, 三年喪에 對하여는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祭祀相續法序說, 1939, pp. 124~125, pp. 134~135를 參照할 것.

(9) 恭讓王元年 憲司上疏曰 葬者藏也所以藏其骸骨不暴露也 近世 浮屠氏荼毘之法盛行 人死則擊而葬之烈焰之中焦毛髮爛肌膚只存其骸骨 甚者焚骨揭灰以施魚鳥 及謂必如是然後可得生天可得至西方也 此論一起 士大夫高明者亦皆惑之 死而不藏於地者多矣 嗚呼 不仁甚矣(高麗史 卷85 志 卷 39 刑法 2).

(10) 時俗喪祭 專尙桑門法 夢周始令士庶做朱子家禮 立家廟奉先祀(高麗史 卷 117 列傳 卷 30 鄭夢周傳)

(11) 鄭公薨方葬也 夫人泣請典喪事者曰 葬不可無銘石識于 隨然無子姓之圖 有以顯後世不朽者 痛莫甚此 予雖婦人聞正言 某是能文者若等 可爲妾奉書往乞銘詞 某曰 予自西掖待午漏方出夫人書 至閱其辭有是憫措則 吾豈惜鄙文以孤其意乎……無兒天意 茫茫孰承家廟以奉蒸嘗何以慰之 國典其喪百官奔葬祖道有光男兒若此無子何傷相彼 小阿松覆鬱蒼宜公之宮萬世之藏 哀哀夫人泣涕霑裳乞銘勤勤(鄭克溫墓誌, 朝鮮金石文總覽上, p. 570).

(12) 廟祀之制古矣 事其親者廟於家 事其聖且賢有功德者廟於國 若州閭其制可考也 自漢以下禮與時變有以廟 貌而易其神主者 有以薦福而廢其常祀者 於是乎 家廟之外又有祠堂矣 然其報本追遠之心則一也 夫其功德有大小 故其報有厚薄而其享有久近焉 前徵政使鄭公之爲視作祠堂也……追贈三代 思及九泉欲構堂梵宮之側 像而祠之 以追其福……慰其孝思子其爲我文之 此韓國祠堂之所 由作而記之所 由述也(鄭仁祠堂記, 朝鮮金石文總覽上, p. 641).

(13) 能敬彼此 無憾喪二親三年 立家廟 事亡之如存(崔文慶墓誌, 朝鮮金石文總覽上, p. 639).

(14) 尹龜生도 國家에서 命을 내리기 前에 家廟를 세워 朱子家禮에 依한 祭祀를 지냈다고 한다(高麗史 卷 121 尹龜生傳 및 尹龜生配崔氏墓誌, 朝鮮金石文總覽上, p. 699).

이 時期에 趙浚은 上疏文을 올려 이제부터는 朱子家禮를 써서 大夫 以上은 三世를 祭祀 지내고 六品 以上은 二世를 祭祀하고 七品 以下 庶人은 다만 父母를 祭祀하되 神主를 모시고 朔望에는 반드시 잔을 드리고 忌日에는 祭祀할 것을 上疏하였다.⁽¹⁵⁾

朱子家禮의 傳來와 더불어 一部學者들이 이것의 보급 權장에 努力함과 아울러 이들이 採擇施行을 上疏·力說하여 드디어 恭讓王 2年(1390년)에 大夫·士·庶人의 立廟 其他의 祭祀에 關한 法令이 制定되었다. 지금 그 法令의 골자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¹⁶⁾

- ① 恭讓王 2年 2월에 判하여 大夫以上은 3世, 6品 以上은 2世, 7品 以下 庶民은 父母를 祭祀하는데 모두 家廟를 세워 (中略) 忌日에는 반드시 祭祀를 지내게 하였다.
- ② (恭讓王 2年) 8月 庚申朔에 士大夫의 家祭儀를 頒行하여 四仲月에는 曾祖父母·祖父母·父母의 三代를 祭祀하되 嫡長의 子孫이 祭主가 된다.
- ③ (前略) 嫡長의 子孫이 無後하면 次嫡의 子孫의 長子가 祭主가 된다.
- ④ 主人(嫡長子)이 初獻이 되고 主婦가 亞獻이 되고 衆兄弟가 終獻이 된다.
- ⑤ 三獻(初獻, 亞獻·終獻)이 되는 사람은 各各 一日間 致齋하고 그 나머지 宗族은 散齋한다.
- ⑥ 祭祀의 行禮儀式은 一切 朱子家禮에 依據한다.
- ⑦ 위의 宗子(嫡長子)가 祭祀하는 法을 지금부터 모두 遵守하여 禮俗을 이루도록 한다.
- ⑧ 宗子가 祭祀하는 法을 遵守해 나가는데 人情과 事勢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宗法에 구애되지 말고 現在의 族長이 神主를 받들고 祠堂(家廟)을 主管하고 나머지 嫡子, 衆子는 모두 그 집에서 함께 祭祀를 지낸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高麗末에 있어서의 喪·祭에 關한 人爲的·制度的 變革에 關한 것이다. 全高麗時代에 있어 그렇게 오래도록 뿌리를 내려온 佛教式 喪祭儀式이 몇 사람의 學者가 朱子家禮式으로 喪祭儀式을 바꾸도록 上疏하거나 또는 그들 스스로 그렇게 實踐하였다 하여 혹은 그것을 法令으로 變革하였다고 하여 곧 佛教式 喪祭가 儒教式으로 바뀌어지겠는가 하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人爲的이고 制度的인 變革이 있었다고 하여 곧 普遍化된 火葬이 없어지고 屍體埋藏으로 바뀌어지거나 佛寺에서의 喪祭의 儀式이 없어지고 家廟의 設置와 그곳에서의 祭祀로 바뀌어지겠는가 하는 點이다. 이러한 것 등에 대한 對答은 朝鮮初期의 喪祭에 關한 考察이 어느 程度 파악된 연후에나 可能할 것이다.

(15) 趙浚上疏曰 孟子曰 不孝有三 無後爲大 其絕祀也 故古者父母終既葬於野 虞而安神廟而祀之 此事亡如事存之道也 吾東方家廟之法 久而廢弛 今也國都至于郡縣 凡有家者 必立神廟 謂之衛護 是家廟之遺法也 嗚呼 委父母之屍於地下 不爲家廟而祀之 不知父母之靈何所依乎 甚非人子之心也 但習以爲常未嘗致思耳 願自今一用朱子家禮 大夫己上祭三世 六品己上祭二世 七品己下至庶人止祭其父母 擇淨室一間 各爲一龕以藏其神主以西爲上 朔望必奠 出入必告 食新必薦 忌日必祭 當忌日不許騎馬出行 對賓客如居喪禮 每歲三令節 寒食上墳之禮 許從俗禮 以厚追遠之風 違者以不孝論(高麗史 卷 118 列傳 卷 31 趙浚傳)

(16) 高麗史 卷 63 志 17 禮 5의 「大夫·士庶人 祭禮」를 筆者가 整理한 것이다(崔在錫, 高麗朝의 <相續制와 親族組織>, 《東方學志》 31, 1982).

禁止하였으며⁽²⁰⁾ 太祖가 公布한 「經濟六典」에는 喪葬에 關한 法規가 있지만 葬墳에 關한 것이 없기 때문에 1410年(太宗 10)에는 葬墳에 關한 制度를 定하게 하였다.⁽²¹⁾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經濟六典」에 異姓兄弟姊妹에 對한 服과 父의 妾이 아닌 乳母에 對한 服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1403年에 朱子家禮에 依해 보충하였는데 1414年(太宗 11)에는 또 「經濟六典」의 五服制度和 朱子家禮의 五服制度가 같지 않는 것이 네가지 있다고 하여 禮曹에서 다음과 같이 服制式을 올리니 그대로 따랐다.⁽²²⁾

① 文公家禮에 甥姪은 小功服, 甥姪妻는 總麻, 甥女는 小功服이나 出嫁後는 한 等を 내리는데 經濟六典에는 異姓四寸兄弟에는 服이 있고 異姓三寸姪과 姪女에는 服이 없으니 家禮에 依하여 異姓三寸姪은 小功服을 입고 그 아래는 總麻服을 입고 三寸姪女는 小功服을 입고 出嫁하면 總麻服을 입게 하였다.

② 家禮에 妻父母와 女婿의 服은 모두 總麻로 하였는데 우리 東方의 婚禮는 男便이 아내의 집으로 가니 中國과 다르기 때문에 高麗 成宗 때에 服을 定하여 妻父母는 期年服을 입고 女婿는 小功服을 입었다. 지금 經濟六典에는 女婿는 妻父母를 爲하여 그 制度를 따라 期年服을 입고 妻父母는 女婿에게 中國의 制度를 따라 다만 總麻服을 입으니 情理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터는 女婿의 服은 東方의 制度에 따라 小功에 준하고 휴가를 15日 주게 하였다.

③ 家禮에는 무릇 女子가 親庭에 있으면 服이 男子와 같은데 지금 經濟六典에는 異姓의 四寸兄弟는 總麻를 입고 異姓의 四寸姊妹는 服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異姓四寸姊妹도 總麻를 입고 出嫁하면 服이 없게 하였다.

④ 家禮에 外孫은 總麻를 입고 그 妻도 같은데 經濟六典에는 外孫은 總麻를 입고 그 妻는 服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그 妻도 總麻로 입게 하였다.

即 異姓三寸姪·姪女, 異姓四寸姊妹, 外孫婦, 妻父母·女婿의 4範疇의 親族의 服을 規定하였는데 妻父母·女婿에 對한 服은 우리나라 特有의 婿留婦家(男歸女家)의 生活을 고려하여 朱子家禮의 服보다 훨씬 높이고 그 밖의 親族員에 對한 服은 朱子家禮를 따르게 하였다.

이듬해인 太宗 12年(1412)에는 忌日의 服裝을 한결같이 朱子家禮를 따르게 하였으며⁽²³⁾ 1432年(世宗 14)에는 「水陸齋」를 除外한 通國喪制는 오로지 朱子家禮에 依據하게 하였

(20) 議政府議 父母喪三年內 及期年喪百日內 禁婚嫁有期以上喪主一婚者勿禁(太宗實錄 太宗 4年 甲申 8月 己丑條).

(21) 太祖即位之初 立經陳紀喪葬之禮 且載六典惟葬墳之制 未有完焉……臣等願令攸司 窆士大夫葬墳之制 以禁奢侈……從之(太宗實錄 太宗 10年 庚寅 4月 甲辰).

(22) 禮曹上服制式啓曰……今經濟六典五服之制與文公家禮不同而未稱人情者四 其一 文公家禮姊妹之子曰甥 服小功 其妻總麻 姊妹之女曰甥女 服小功 適人降一等 今六典 異姓四寸兄弟尙有服 而於異姓三寸姪及姪女無服 輕重失序願依家禮 異姓三寸姪服小功 其妻總麻 三寸姪女小功 出嫁則總麻 其二 家禮妻父母女婿之服 皆曰總麻 吾東方婚姻之禮 夫就婦家 異於中國 故前代成宗時 窆服於妻父母服期年 女婿小功 今六典增爲妻父母從其制服期年 妻父母於婿乃從中國之制 止服總麻 未稱情願自今 女婿服亦依東方之制 准小功 給暇十五日 其三 家禮凡女在室則服與男子同 今六典 異姓兄弟服總麻 而姊妹則無服 願自今異姓四寸姊妹 亦服總麻 出嫁則無服 其四 家禮 外孫服總麻 其妻同 今六典於外孫服總麻 而妻則無願 自今外孫之妻 亦服總麻 (太宗實錄 太宗 11年 辛卯閏 12月 己卯條)

(23) 至是 禮曹上言 按文公家禮 忌日不飲酒食肉不聽樂 黻巾素服素帶 以居夕寢于外 自今 忌日之服一遵家禮乞於先王先后之忌 行香使之服 亦用白布衣紗帽角帶 從之(太宗實錄 太宗 12年 壬辰 6月 己未條).

다. (24) 1442年(世宗 24)에는 喪主노릇은 오로지 承重長孫만이 할 수 있을 뿐이고 外祖母 喪에 外孫은 喪主노릇을 할 수 없다고 判示하였다. (25)

1474年(成宗 5)에는 父母의 火葬을 엄하게 다스리게 하되 違反者를 검거하지 못한 官吏, 管領, 里正이나 가까운 이웃까지도 重論하게 하였다. (26)

또 中宗 11년(1516年)에는 鄭光弼, 朴說, 金應箕, 申用溉, 金詮 등이 庶人이나 賤人들도 모두 三年喪을 하도록 議論하였는데 (27) 庶人이 役事를 避하려고 三年喪을 行하기를 自請하는 者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庶人 모두 三年喪을 行하도록 하는 것은 不可하고 다만 眞情으로 行하려는 사람은 들어주라고 王이 말하였다. (28)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그 당시의 朝鮮의 實情을 反映한 喪葬法은 얼마되지 않고 한결같이 朱子家禮의 禮法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法制化하였다. 이러한 傾向은 다음에 살펴볼 祭禮制度에도 나타나 있다.

2. 朝鮮初期의 祭祀

지금까지는 喪葬에 關한 法制를 알아보았지만 지금부터는 祭祀에 關한 法規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의 主要關心事가 法制가 아니라 實際의 喪葬과 祭祀이기 때문에 이 祭禮에 關한 法規에 있어서도 이미 살펴본 喪葬에 關한 法制에 있어서처럼 그 大體의인 傾向 내지 骨字단을 살펴볼 뿐이고 그것에 關한 모든 法規를 빼놓지 않고 모두 망라하여 찾아내는 일은 아니다.

朝鮮 開國의 당해년인 太祖 元年(1392年)에 벌써 家廟를 세워서 先祖에 對한 祭祀를 지내게 하고 그 밖의 祭祀는 一切 禁斷케 하였다. (29) 1397年(太祖 6)에는 期日까지를 定하여 그때까지 禮堂을 세우게 하되 所謂舊弊 卽 佛教式 祭祀를 따르는 者는 憲司로 하여금 料理케 하였다. (30) 이해는 「經濟六典」이 公布된 해인데 그 六典에는 次子는 家廟(祠堂)은 세울 수 없게 規定하였다. 嫡長主義를 적극 권장한 事例라 하겠다.

1401年(太宗 元年)에는 大司憲 李至 等の 上疏를 받아들여 士大夫家에서 먼저 肅正하여 家廟를 세우게 하고 守衛이 嫡長子면 神主를 받들고 赴任地에 赴任케 하고 祭祀儀式은 朱

(24) 集賢殿副提學俊侁等 上書曰……通國喪制 今設水陸其餘節目 一依家禮(世宗實錄 世宗 14年 壬子 3月 甲子條).

(25) 慶尙道都觀察使權孟孫 今卿欲代服 外祖母之喪 予惟代喪之法 乃承重長孫之事 無外孫代喪之例 卿其知之(世宗實錄 世宗 24年 壬戌 7月 戊寅條)

(26) 禮曹啓……今也無識之徒 或愴於邪說 或愛惜其投諸火焰 以毀親屍 人所不忍爲也 今後 如有犯者 請依律論斷其誑 誘者與同罪 不能檢舉官吏及管領里正 切隣亦重論 從之(成宗實錄 成宗 5年 甲午 4月 己卯條).

(27) 中宗實錄 卷 26 中宗 11年 11月 癸未條.

(28) 上曰 庶人或托此避役而 請行三年者 令一切並行 三年似不可也 若至誠欲行者 可聽也(中宗實錄 卷 26 中宗 11年 甲辰條).

(29) 自公鄉至于下士 皆立家廟以祭先代 庶人祭於其寢 其餘淫祀一皆禁斷(太祖實錄 卷 2 太祖 元年 壬申 9月 壬寅條)

(30) 諫官上書言事……立廟敢有違令 尙循舊弊者 令憲司料理……上俞允施行(太祖實錄 卷 11 太祖 6年 丁丑 4月 丁未條).

子家禮(文公家禮)를 따르게 하였으며⁽³¹⁾ 1416年(太宗 16)에는 단약에 家廟設置期限을 今年으로 잡으면 犯法者가 많을 것이니 丁亥年 12月까지로 길게 잡을 것과 三品 以下로서 집이 가난하고 터가 좁아서 家廟를 세울 수 없는 자에게는 「經濟六典」에 의거하여 房 한칸을 골라 祭祀지내게 하였다.⁽³²⁾

1429年(世宗 11)에는 前年인 1428年의 詳定所⁽³³⁾와 禮曹의 家廟祭禮에 關한 上書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① 단약 長子와 長孫이 잔약하고 용열하여 남의 집에 고용되어 살고 있어 비록 宗人이 있어 相助 하더라도 마침내 祠堂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次子가 「經濟六典」의 廟를 세울 수 없는 예에 따라 王室 한칸을 가려서 神主를 받든다.

② 長子와 長孫이 祠堂을 세우게 되면 神主를 奉置한다.

③ 그밖의 長子와 長孫은 비록 廢疾者라도 진실로 宅舍만 있으면 모두 祠堂을 세우게 한다.

④ 曾祖廟는 文公家禮의 大宗·小宗의 圖에 依據하면 曾祖의 長子와 長孫은 宗이 되어 人을 짓고 神主를 세워 祭祀를 지내는 것이므로 曾祖의 衆曾孫들은 그집에 가서 執事와 더불어 물건으로 相助한다.

⑤ 그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祭祀에 참여치 못하는 사람은 文公家禮에 의거하여 祭祀 지낼 때만 神主를 설치하고 紙榜으로 標記했다가 祭祀를 마치면 이를 불사르고 祖父와 아버지의 廟祭도 또한 그렇게 하게 하였다.

1430年(世宗 12)에는 「今年이 5·6品들이 家廟를 세우는 最後의 해」라고 判漢城府事가 아뢰니 世宗은 다만 家廟를 세우고 아니 세운 것만을 考察하겠다고 하였으며⁽³⁵⁾ 이듬해인 1431년에는 大司憲이 家廟設置時限年을 1433年(癸丑)으로 하면 設置하지 못하여 罪를 犯하는 者의 數가 많아질 것이므로 그 時限은 1438年(戊午)으로 延期하는 것이 좋겠다고 上言하니 國王은 그 時限을 늦추지 않고 治罪하겠다고 하였다.⁽³⁶⁾

(31) 己未 司憲府大司憲李至等疏陳數條 疏曰 一家廟之法不可不嚴也……士大夫家先行之而後及其餘則何所不行乎……受命出守者爲 嫡長則奉神主而任 非嫡長則亦於州縣祠堂用紙牌行禮……凡祭儀一依文公家禮以示於下則 不待勸勉而自然及於民矣 雖素不立廟者必自此而興起矣(太宗實錄 卷 2 太宗元年 辛巳 12月 己未條)

(32) 議政府擬議以聞政府議得……第六條論家廟事 若限以今歲則 犯法者必多 乞以來丁亥年十二月爲限 其間三品以下家貧地隘不能立廟者 許從六典擇淨室一間 以時致祭……從之(太宗實錄 卷 11 太宗 16年 丙戌 6月 丁丑條).

(33) 世宗實錄 卷 41 世宗 10年 戊申 9月 癸亥條.

(34) 禮曹與詳定所議定大小人員家廟祭禮未盡條件以啓……若長子長孫孱劣雇居人家 雖有宗人相助終不得立祠堂者 次子依經濟六典不能立廟者例 擇正室一間以奉神主 待長子長孫立祠堂奉還神主……曾祖廟依文公家禮大宗小宗圖 曾祖之長子與長孫爲宗營祠堂立神主行祭 同曾祖衆子孫詣其家與執事以物相助 其有相去遠而不能與祭者 依文公家禮只於祭時旋設位 以紙榜標記祭畢焚之 祖禰廟祭亦然……從之(世宗實錄 卷 44 世宗 11年 己酉 4月 丁酉條)

(35) 判漢城府事徐選啓 今年乃五六品立家廟限年也……上曰……(但考其立廟與否耳(世宗實錄 卷 49 世宗 12年 庚戌 9月 癸酉條).

(36) 大司憲許誠啓 士大夫家廟之設限來癸丑年考察科罪 若然則犯罪者多不可勝治 請限以戊午年 上曰 凡事定限遠則人心緩弛事益虛疎……來癸丑年正月爲始考察治罪可矣 何更弛其限乎(世宗實錄 卷 54 世宗 13年 辛亥 12月 癸丑條).

1432年(世宗 14)에는 大小人民과 官吏들 中에서 家廟祭禮를 하지 않는 者는 1434年(甲寅) 正月부터 調査하여 처벌하게 하였으며⁽³⁷⁾ 1485年(成宗 16)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經國大典」이 頒布되었는데 禮典 奉祀條에는 嫡長子が 祭祀를 지내되 만일 嫡長子が 無後하면 衆子が 奉祀하고 衆子が 無後하면 다시 妾子로 하여금 祭祀를 지내게 하였다.

16世紀에 들어와서도 朱子家禮式으로 祭祀지내지 않는 者는 여전히 規制하였다. 1516年(中宗 11)에 大夫의 班列에 있는 사람도 딸이 있으면 養子를 세우지 않는다고 개탄하고 後孫이 없는 大夫도 神主를 만들고 祠堂祭祀를 꼭 해야만 한다고 參贊官이 上言하기도 하였다.⁽³⁹⁾ 後孫 없는 大夫가 神主나 祠堂祭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入養子를 하여 그에게 奉祀케 하라는 뜻으로 解釋된다. 明宗 10年 即 1555년에는 家廟를 세워서 祭祀를 받들거나 親喪을 입지 않는 者는 檢擧하라고 엄명까지 하였다.⁽⁴⁰⁾

지금까지 朝鮮初期의 實際的인 것이 아닌 規制的·法制的인 喪葬이나 祭祀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特徵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① 佛敎式 喪·祭에서 儒敎式 喪·祭로 바꾸어야 한다.
- ② 儒敎式 가운데서도 주로 朱子家禮의 內容을 따르게 한다.
- ③ 家廟(祠堂)은 꼭 세우고 祭祀를 지내야 한다.
- ④ 長子が 奉祀하여야 한다.
- ⑤ 喪葬變革보다 祭祀에 對한 變革에 더욱 力點을 두고 있는 것 같다.
- ⑥ 長期間에 걸쳐 여러번 끈질기게 喪葬이나 祭祀의 改革을 法制的으로 規制하였다.
- ⑦ 喪祭가 變革된 것은 自然的인 것이 아니라 政治權力에 依한 人爲的인 것이었다.

3. 實際로서의 朝鮮初期의 喪祭

위에서 朝鮮 初期의 法制的인 喪葬의 面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實際의 것을 알아보 고자 한다. 前節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佛敎式 喪祭에서 儒敎的인 喪祭에의 變革은 16世紀까지 오랫동안 걸쳐 여러번 끈질기게 法制的으로 規制하였다는 것 自體가 바로 그 當時 佛敎式 喪祭가 行해졌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朝鮮 王朝實錄에서 佛敎式 喪制가 행해진 몇가지 事例를 찾아 이에 對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먼저 喪葬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37) 禮曹啓……今大小人吏不立家廟者頗多 請令憲府來甲寅年正月爲始考察其不奉行者 依會降敎旨科罪……從之(世宗實錄 卷 55 世宗 14年 壬子 2月 辛卯條).

(38) 若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奉祀(經國大典 卷 3 禮典 奉祀條).

(39) 參贊官申瑞曰……今世俗雖在大夫之列者 若有女子則不肯立後者恐其田宅奴婢歸于他人也 大夫之無後者爲神之立祠之法自 上當使嚴立而行之(中宗實錄 卷 26 中宗 11年 丙子 10月 己巳條).

(40) 傳于政院曰 不立家廟不行祭祀不服親喪者 令法司該曹嚴命擧(明宗實錄 明宗 10年 10月 戊寅條).

1. 朝鮮初期의 喪制

1392年(太祖 元) 喪克廉은 아들이 없었으나 養子를 하지 않아 누이의 外孫(安純)이 喪事를 주관하였다.⁽⁴¹⁾ 高麗時代는 百日喪이 一般의 風習이 되고 오히려 「朱子家禮」에 있는 三年喪制는 實際로 行해지지 않았는데⁽⁴²⁾ 이러한 風習은 太祖 7年(1398年)의 記錄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목은 習慣에 따라서 겨우 百日만 차면 吉服을 입고 혹은 白衣·白笠으로 朝路에 奔走하게 돌아다니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記錄되어 있다.⁽⁴³⁾ 1年 後인 1399年(定宗 元)의 記錄에도 「三年의 喪은 天下의 共通의 喪이온데 (中略) 겨우 百日만에 吉服을 입고 飲酒와 肉食을 하며 男女와 婚姻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⁴⁴⁾ 1403年(太宗 3)의 記錄에는 「婦女子는 前朝(高麗)의 弊習을 따라 모두 百日을 限界로 삼아 服을 벗는다」고 되어 있다.⁽⁴⁵⁾ 다음해인 1404年에도 士大夫집일지라도 衰經 中에 婚姻을 許諾하거나 또는 成婚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⁴⁶⁾

開國한지 40年이 되는 해인 1432年(世宗 14)의 記錄을 보면 儒敎式으로 喪葬을 치를것을 法制化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佛敎式으로 喪을 치르는 者가 士大夫 10名 中 6·7名이고 儒敎式으로 喪을 치르는 者는 10名 中 겨우 3·4名에 不過하였다. 佛敎式으로 治喪하는 者는 「齋」를 올리고 佛寺를 찾아 行하였다.⁽⁴⁷⁾

屍體를 火葬하는 葬禮는 成宗朝에도 行해졌으며 16世紀인 中宗때까지도 士大夫들이 喪祭를 朱子家禮대로 舉行하지 않았으며 哭하는 法이나 飲食節次나 期年親服制에 功親服制(大功親·小功親服制)를 방치하고 講究하지 않는 實情이었다.⁽⁴⁸⁾

지금까지는 喪·葬에 對하여 알아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實際의 祭祀가 어떻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朝鮮初期의 祭祀

開國 첫해부터 家廟祭祀를 規定하였는데도 不拘하고 그로부터 5年 後인 1397年(太祖 6)의 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즉 「士大夫의 家廟의 制度가 이미 著令한데 專的으로 佛敎(浮屠)를 崇尚하고 鬼神에 아첨하여 家廟를 세워 祭祀를 받들지 아니한다」라고

(41) (襄)克廉無子 姉之外孫安純主喪(太祖實錄 卷 2 太祖 元年 壬申 12月 戊申條).

(42)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祭祀相續法序說, 1939, p. 125.

(43) 諫官柳觀等上書曰……習循故常僅滿百日而即吉 或以白衣白笠奔走朝路恬不愧 非惟有乖於聖制……(太祖實錄 卷 13 太祖 7年 戊寅 2月 戊寅條)

(44) 三年之喪 天下之通喪……百日即吉餘酒啖肉男女昏烟無所不爲(定宗實錄 卷 1 定宗 元年 乙卯 2月 庚辰條).

(45) 婦女尙循前朝之弊 皆以百日(太宗實錄 卷 5 太宗 3年 癸未 4月 庚戌條).

(46) 我朝士大夫之家身及主婚者 雖在衰經之中 及或有許嫁成婚(太宗實錄 卷 8 太宗 4年 甲申 8月 己丑條).

(47) 士大夫上體聖意喪制不用浮屠者 什已三四而……臣庶治喪設齋致客婦女上寺漸復舊俗(世宗實錄 卷 55 世宗 14年 壬子 3月 甲子條).

(48) 我國士大夫之喪亦未合禮 哭踊之數 飲食之節 期功之服 皆廢不講(中宗實錄 中宗 11年 丙子 11月 癸未條).

記錄되어 있다.⁽⁴⁹⁾ 또 太宗實錄에는 家廟設置의 勅이 내린지 여러 해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佛敎에 傾倒되어 家廟를 세우지 않았으며 또 家廟祭祀를 즐겨 行하는 者가 없고 또한 異端의 邪說(佛敎)이 굳어져 이것을 깨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家廟를 設置하는 方法도 모르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⁵⁰⁾

太宗 6年(1406年) 現在 朱子家禮式의 家廟를 세운 者가 100名에 한두 사람도 안되며 그 當時 家廟設置의 勅을 따르지 아니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事實에 가까운 記錄일 것이다.⁽⁵¹⁾ 世宗朝時代에도 우리나라는 大·小宗의 制度가 없었다는 記錄이 世宗實錄에 나타나 있다.⁽⁵²⁾ 이것은 매우 重要하고도 注目해야 할 點이다. 宗法과 거기에 따른 大·小宗의 制度가 없었다는 것은 父系의 共同祖上의 祭祀를 爲한 父系血緣集團 즉 氏族이 存在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史料이기 때문이다.

世宗 13年(1431年)의 實錄에는 國法으로 朱子家禮를 따라 卿大夫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家廟를 세워 祭祀 지낼 것을 定하였으나 사람들이 佛敎에 감염된지 오래되어 有識者도 「齋」을리는 風俗이 아직도 혁파되지 않았으며 祖上忌日에도 「僧齋」라 부르는 齋를 行하여 僧侶에 榻대접하는 것을 重要한 일로 생각하고 家廟의 祭祀를 돌보지 않는다고 記錄되어 있다.⁽⁵³⁾ 다음해인 1432年(世宗 14) 現在 大小의 人民과 官吏들 中에는 家廟를 세우지 않는 者가 대단히 많았다.⁽⁵⁴⁾ 家廟를 세우지 않는 者는 大部分 佛敎式 祭祀인 「齋」를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前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들이 아들 가운데서도 長子가 祭祀를 지내도록 法令化되어 있는데도 世宗 24年(1442年)의 記錄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⁵⁵⁾

今世俗雖無子若有女孫則 無一人借他人之子爲後

즉 그 當時의 風俗에는 비록 奉祀할 아들이 없더라도 만약 女孫 즉 딸의 子孫이 있으면 他人의 子를 養子로 삼는 者가 한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이것도 매우 重要하고도 注目해야 할 現象이다. 아들이 없더라도 딸이 있으면 女婿나 그의 子孫이 아들처럼 奉祀를 하기 때

(49) 士大夫家廟之制已有著令 而專尚浮屠詔事鬼神 曾不立廟以奉先祀(太祖實錄 太祖 6年 丁丑 4月 丁未條).

(50) 自浮屠速化之說行 而爲人子感於邪說 親歿則薦之於佛 以爲得生天堂 除喪之後付之空虛 不復廟而事之……必先家廟之令 欲民德之歸厚既有年矣 然有樂而行之者 蓋異端之邪說堅不可破 亦未知施設之方也(太宗實錄 太宗 元年 辛巳 12月 己未條).

(51) 今立廟之家百無一二 不從國令恬不爲愧 殊無人子之意(太宗實錄 太宗 6年 丙戌 6月 丁丑條).

(52) 詳定所提調李稷黃喜下季良許稠申商趙啓生鄭招等議啓…… 國俗無大小宗之制……(世宗實錄 世宗 10年 戊申 9月 癸亥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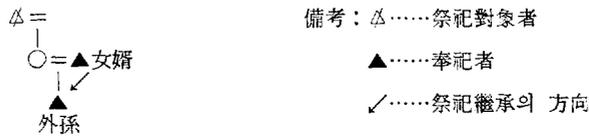
(53) 國家立法制 一遵文公家禮 自鄉大夫至於庶人 今立家廟依品致祭 然人之感佛已久 齋僧之風尙未盡 忌日則名曰僧齋 徒知飯僧之爲急 不顧祠堂之祭 識者尙況遇民 家廟之設徒爲文具是可嘆(世宗實錄 世宗 13年 辛亥 12月 丁巳條).

(54) 今大小人不立家廟者頗多(世宗實錄 世宗 14年 壬子 2月 辛卯條).

(55) 世宗實錄 世宗 24年 壬戌 8月 辛丑條.

문에 구태어 同姓者라 하더라도 養子함 必要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養子에 關하여는 이미 다른 論考에서 상세하게 言及한 바 있으므로⁽⁵⁶⁾ 여기서 다시 再論은 하지 않겠지만 韓國의 氏族을 父系祖上의 祭祀를 爲한 父系血緣集團이라고 생각할 때 아들이 없는 경우 養子를 하여 그로 하여금 祭祀를 지내게 하지 않고 딸로 하여금 親庭父母의 祭祀를 지내게 한 時期에는 氏族은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딸이 있다고 하더라도 奉祀에서 除外되고 同姓(近親)의 養子로 하여금 奉祀를 行하게 하는 것이 어느 程度 普遍化되었을 時期에 氏族이 形成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1472年(成宗 3)의 成宗實錄에도 庶人은 물론이러니와 士大夫도 家廟를 세우지 않고 神主 代身에 紙錢을 使用했다고 한다.⁽⁵⁷⁾ 子와 媾와 의논하고 證人을 세우고 그리고 自筆로 文契를 作成하기만 하면 長男 아닌 三男에게 奉祀케 할 수 있으며 또한 女媾가 奉祀하던 祭祀를 外孫에 繼承시킨 事例가 역시 成宗實錄에 보인다.⁽⁵⁸⁾ 理解의 편의상 지금 後者の 祭祀繼承의 方向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法制와는 달리 아들이 없더라도 딸이 있으면 딸(女媾)이 父母(妻父母)의 奉祀者가 되는 15世紀의 慣習은 16世紀까지도 持續된다.⁽⁵⁹⁾

我國雖大夫之無後者亦不立祀 使女子爲之祭

위의 記錄은 中宗 11年(1516年)의 實錄의 것인데 庶人이 아닌 士大夫가 아들이 없더라도 딸이 있으면 그 딸로 하여금 祭祀를 지내게 하는 것이다. 역시 같은 해의 記錄인데 嫡子가 있으면 支子가 祭祀를 받들지 못하는 것이 家禮인데 그 當時의 풍속은 父母의 忌日에 神主 代身 紙榜을 만들어 자녀(各家)가 돌려가며 祭祀를 지냈던 것이다.⁽⁶⁰⁾

또 다음해인 1517年(中宗 11年)의 記錄에도 士大夫家일지라도 時祭는 宗家가 아니라 딸은 집에서 지내며 忌祭도 家廟를 세운 집 卽 宗家가 곁에 있을지라도 그집에서 지내지 않

(56) 崔在錫, 朝鮮時代の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 81, 1979.
 崔在錫, 朝鮮時代の 養子制와 親族組織, 歷史學報 86, 87, 1980.
 (57) 傳旨禮曹司憲府曰 在世宗朝從文公家禮 令士大夫立家廟庶人立淨室 祭以四仲朔 今此制陵夷 士大夫不立家廟 甚者不作神主代以紙錢 士大夫尙爾況庶人乎(成宗實錄 成宗 6年 壬辰 6月 戊寅條).
 (58) 初中樞府知事金連枝而死 連枝有三子 長曰益壽 次曰慶壽 慶壽生二子 先連枝而死 連枝以益壽不堪主祀 手成文券以堅壽奉家祀及益壽……今考連枝文卷 既與子媾談之又具證保自筆書之自家宗祀與外舅奉祀並昇堅壽 非因愛憎草草亂命(成宗實錄 成宗 6年 己未 2月 壬午條).
 (59) 中宗實錄 卷 26 中宗 11年 丙子 10月 己巳條).
 (60) 有嫡子則支子不得祭之者禮也 今俗其親忌日棄神主爲紙榜 各家輪回祭之 (中宗實錄 中宗 11年 丙子 10月 己巳條).

고 支家에서 紙榜을 써서 지냈다고 하며⁽⁶¹⁾ 이리하여 國王도 忌祭를 支家에서 지내는 것을 法으로 禁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²⁾

「牛溪文集」에 依하면 16世紀에 祭祀의 輪行이 存在한 것으로 되어있다.⁽⁶³⁾

「丁酉年(1597年) 五月 國俗에 時祭는 宗孫이 奉行하고 나머지 忌辰節祭는 內外諸孫이 둘러가며 奉行하며 忌祭는 宗孫과 諸子孫이 當行하는데 紙榜은 神座에 올려놓고 奉行한다. 前에 聽松先生時에 이미 祭田과 墓直奴를 墓下에 두어서 節祀에 쓰이도록 하다. 先生은 또 이 制度를 세우고 一切의 祀事를 宗孫에 돌아가도록 하고 輪行하는 法을 盡廢하였다」.

위의 記錄에는 16世紀에 이미 輪行祭祀가 盡廢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本人의 分財記에 依한 朝鮮時代의 相續制度研究⁽⁶⁴⁾에 依하면 18世紀까지 祭祀의 輪行·分擔奉行의 事例가 存在하였으므로 聽松의 生存時期(1493~1564)에 祭祀輪行이 없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法制에 依한 強要에도 不拘하고 朝鮮初期는 朱子家禮에 依據하지 않는 高麗의 喪·祭 即 佛教式 喪祭가 많이 行해졌던 것이다. 물론 朱子家禮에 依한 喪祭는 後期로 내려올수록 普遍化되었으며 高麗의 佛教式 儀式은 時代의 經過와 더불어 弱化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맺 는 말

지금까지 朝鮮初期의 喪祭에 對하여 法制와 實際의 두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法制的으로는 오랫동안 끈질기게 여러번 從來의 佛教式 喪祭를 「前朝의 弊」, 「淫祀」, 「專尙浮屠」, 「諂事鬼神」, 「舊弊」, 「浮屠速化說」 등으로 規定짓고 이를 엄금함과 同時에 적으로 朱子家禮式의 喪祭를 行할 것을 强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朱子家禮式 喪祭는 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어도 15世紀까지는 儒教式을 따르는 사람도 있으나 그 대다수는 高麗의 佛教式 喪祭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佛教式 喪祭는 朝鮮中期를 지나 朝鮮後期로 내려올 수록 儒教式 喪祭에 그 地位를 양보해간 것으로 보여진다.

儒教式 喪祭制의 骨子是 屍體火葬·埋骨이 아닌 屍體埋藏과 父母에 對한 三年喪, 그리고 家廟祭祀와 長子奉祀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보아온 것처럼 만일 아들이 없더라도 딸이

(61) 我國祭祀不正 士大夫家時祭則主祀之家祭之 若忌日則 雖有識之家 不祭於立廟之家 只用紙榜以祭之 主祀立廟之家雖在榜亦不祭於其家(中宗實錄 卷 29 中宗 12年 丁丑 8月 庚戌條).

(62) 傳曰 他事則徐當見而處之 忌祭之行於支家 果不可立法禁止也(中宗實錄 卷 29 中宗 12年 丁丑 8月 壬子條).

(63) 丁酉五月 國俗 惟時祭宗子行之 而其餘忌辰及俗節上冢之祭內外諸孫輪行之 忌祭則宗子與諸子孫 諄當行之 家題紙榜置神座而祭之 先是聽松先生時 已置祭田及墓直奴於墓下俾掌節祀矣 至是先生又 立此制 使一切祀事歸之宗子 而盡廢輪行之規(成渾牛溪先生集 卷 6).

(64) 崔在錫, 朝鮮後代之 相續制에 관한 研究, 歷史學報 53·54 合輯, 1972.

있으면 딸로 하여금 奉祭祀케 했다는 16世紀 初의 記錄에 注目한다면 長子奉祀와 아들이 없는 경우의 立後者奉祀의 普遍化는 그보다 훨씬 以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分財記의 記錄이나 王朝實錄의 記錄을 綜合해 보면 朝鮮 初期의 祭祀는 儒敎式 祭祀와 佛敎式 祭祀로 區分되고 前者는 다시 長子奉祀와 子女間輪行・分擔祭祀로 區分된다. 長子奉祀는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오랜 기간동안의 法制에 依한 強要에 起因하고 子女輪行이나 分擔祭祀는 高麗時代부터의 社會的 背景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祖上祭祀는 佛寺에서 佛敎式으로 行해지고 土地 및 奴婢도 子女의 差別없이 均分相續을 하고 封爵蔭職・功蔭田相續 等에도 子와 婿, 親孫이나 外孫 사이에 그다지 差別이 없었다는 것이 高麗社會의 特徵이었다.

朝鮮時代에 들어와 家廟祭祀가 普遍化함에 따라 一部는 朱子家禮대로 長子가 奉祀를 하게 되지만 나머지는 이미 말한 財產相續의 子女均分과 蔭職相續의 親孫과 外孫間의 無差別의 樣式을 따르는 것은 當無한 歸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祭祀도 아들이 없으면 딸(婿)이 奉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輪行・分擔祭祀도 18世紀에 가서는 거의 사라지고 모두 長子奉祀로 變化되어갔던 것이다.